

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'99년도 준공된 파주시 여성회관의 시설관리업무와 도라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의 관리 운영업무 등 단순 시설관리업무에 대해 정부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세수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가. 여성회관의 전기, 난방, 청소, 경비등 시설관리부문을 민간에 위탁
- 나. 도라전망대의 망원경 및 동전교환기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
- 다. 수탁기관은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
- 라. 위탁 방법은 위 수탁자간의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

□ 검토의견

○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음.

본 동의안은 이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음

〈 지방자치법 〉

제95조(사무의 위임등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〈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〉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○ 내용타당성

- 본 동의안에 의하면 여성회관의 시설 관리업무와 도라전망대의 망원경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.
- 양 업무(여성회관 시설 관리업무와 도라전망대 관리운영업무)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의 구체적 효과에 대하여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
- 양 사무의 민간위탁업체 선정문제의 경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므로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. (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)

〈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〉

제7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,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